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1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윤준병의원안)	3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1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7인
- (2) 제 안 일 : 2025. 2. 10.
- (3) 회 부 일 : 2025. 2.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6조제1항) <u><신 설></u>	☐ 공급 면세대상에 영유아용품 추가 ○ 영유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u>기저귀, 물티슈, 비누, 보습제 등 위생용품</u> - <u>분유, 모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이유식 등 육아에 필요한 식품</u> - <u>젖병, 젖꼭지, 유축기, 수유쿠션 등 수유용품</u> - <u>기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용품</u>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제27조) <u><신 설></u>	☐ 수입 면세대상에 영유아용품 추가 ○ 영유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u>기저귀, 물티슈, 비누, 보습제 등 위생용품</u> - <u>분유, 모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이유식 등 육아에 필요한 식품</u> - <u>젖병, 젖꼭지, 유축기, 수유쿠션 등 수유용품</u> - <u>기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용품</u>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윤준병의원안 2025. 2. 10. 발의(의안번호 8016)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육아용품에 추가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기저귀·물티슈·비누·보습제 등 위생용품, 분유·모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이유식 등 육아에 필요한 식품, 젖병·젖꼭지·유축기·수유쿠션 등 수유용품, 기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용품 등 영유아용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¹⁾에 따라 면제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면제되는 육아용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물품의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경우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음.

참고로, 교육부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은 전체 평균 111만 6천원으로 2024년 가구소득 대비 17.8%, 가구지출 대비 29.4%를 차지하며, 2024년 양육비는 2021년 대비 14만원이 증가하여 14.3%p 상승한 수치로 나타나 영유아 양육가구에 부담이 되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있음.²⁾

둘째,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³⁾은 잠정 0.75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평균 1.46명)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천명, 가임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잠정)
출생아 수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합계출산율	1.05	0.98	0.92	0.84	0.81	0.78	0.72	0.75

자료: 「2024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육아용품은 제품별 가격 편차가 커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더라도 면세의 효과가 육아용품의 유통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이윤으로 흡수되어 면세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2024.12.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은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가구 중 0세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임. 생년월일이 2018.1.1.~2024.5.31.인 아동 중 2024년 5월 말 기준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수급자(1,754,610명)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정보가 부정확한 2,073명을 제외한 1,752,537명을 조사대상으로 함.

3)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실제로 2009년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이후 해당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 부가가치세 면세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귀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음.⁴⁾

둘째, 자녀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으로 이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⁵⁾ 및 자녀세액공제⁶⁾ 등의 세제 지원이 있어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있고, 간접적인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아동·양육수당 지급과 같은 재정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필수재화 등에 부가가치세 면세 중으로 면세범위가 OECD 주요국에 비해 넓은 수준이고, 영유아용품에 대한 추가적인 면세 확대는 실효성, 집행가능성, 형평성 등 감안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유아용품 범위를 확대할 경우 2026년 36억원 등 2026~2030년 5년

4)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소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1., p.19~25

5)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6)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간 총 174억원(연평균 35억원)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세 (74.7%)	-27	-26	-26	-25	-25	-130	-26
지방소비세 (25.3%)	-9	-9	-9	-9	-9	-44	-9
합계	-36	-35	-35	-34	-34	-174	-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2025년 7월 현재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⁷⁾,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⁸⁾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2건의 개정안 모두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내용임.⁹⁾

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2024.9.13.)(의안번호 220400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 물품으로서 그 종류와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2024.8.5.)(의안번호 2202570)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한다),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

9) 2024년 정기회 조세법안소위에서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서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찬성 의견이 있었고, ② 영유아용품 면세 확대가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 효과와 비용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 ③ 이에 대해 정부는 출산·육아 지원은 세액공제나 부모급여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면세 확대는 물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조세정책에 맞지 않으므로 부가세 체계 내에서 예외적인 면세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제418회 조세소위 제3차, 2024.11.19.).

문 의 처
02)6788-5147